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225

발의연월일: 2024. 11. 4.

발 의 자:김남희·송재봉·송옥주

윤후덕 • 박상혁 • 김정호

정성호 · 이강일 · 임광현

김우영 • 민병덕 • 김영환

한민수 · 김영진 · 이연희

안태준 • 조정식 • 최기상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가입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근거 규정과 절차가 없어 환자들이 직접 국회 청원을 통해 급여 확대 를 요청하는 상황임.

또한,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일부를 건강보험에 적용하고 있지만, 요양급여와는 다르게 '요양비'로 지급되 어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로움.

이에 건강보험 가입자가 건강보험 등재를 통한 급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약제 등 요양 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급여 실시 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만들어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두텁 게 보호하고자 함. 아울러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혈당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,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(안 제41조, 제41조의3및 제41조의6 신설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522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"제1항제2호의 약제"를 각각 "제1항제2호의 약제 및 제8호의 의료기기"로 한다.

8. 의료기기(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)의 지급 또 는 대여

제41조의3의 제목 중 "치료재료 및 약제"를 "치료재료·약제 및 의료기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치료재료 및 약제"를 "치료재료·약제 및 의료기기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약제"를 "약제 및 의료기기"로 한다.

- ②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,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1.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"약제의 제조업자등"이라 한다): 요양급여대

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(이하 이 조에서 "약제"라 한다)

2.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조업자·수입업자 등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"의료기기의 제조업자등"이라 한다):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8호의 의료기기(이 하 이 조에서 "의료기기"라 한다)

제41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1조의6(가입자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요청) ① 가입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정한 비급여대상(입원, 간호 및 이송은 제외한다)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.
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요청과 제3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·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.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의료기기 임대업자의 영업소
-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약제·치료재료"를 "약제·치료재료 료·의료기기"로 한다.

제101조의2의 제목 중 "약제"를 "약제 및 의료기기"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약제의 제조업자등"을 각각 "제조업자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요양급여) ① 가입자와 피	제41조(요양급여) ①
부양자의 질병, 부상, 출산 등	
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	
급여를 실시한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의료기기(「의료기기법」에
	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)의
	지급 또는 대여
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(이	2
하 "요양급여"라 한다)의 범위	
(이하 "요양급여대상"이라 한	
다)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(<u>제1</u>	1 <u>利1</u>
<u>항제2호의 약제</u> 는 제외한다):	항제2호의 약제 및 제8호의
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	의료기기
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	
제외한 일체의 것	
2. <u>제1항제2호의 약제</u> : 제41조	2. 제1항제2호의 약제 및 제8호
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	<u>의 의료기기</u>
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	
고시한 것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41조의3(행위 · <u>치료재료 및 약</u>	제41조의3(행위 · <u>치료재료 · 약제</u>

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급여 의 결정 및 조정) ① (생 략)

②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 · 수입업자 등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"약제의 제조업자등"이라 한다) 는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 제(이하 이 조에서 "약제"라 한 다)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 정을 신청할 수 있다. <신 설>

<신 설>

대상 여부의 결정 및 조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・수입업자, 「의료기 기법 | 에 따른 의료기기의 제 조업자・수입업자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 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- 1.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 · 수입업자 등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"약제의 제조업자등"이라 한 다):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 지 아니한 제41조제1항제2호 의 약제(이하 이 조에서 "약 제"라 한다)
- 2.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 기기의 제조업자・수입업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"의료기기의 제조업 자등"이라 한다): 요양급여대

- ③ (생 략)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행위·치료재료 및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할 수있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 2항제2호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으로 결정하여 고시한 <u>약제</u>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 부, 범위, 요양급여비용 상한금 액 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.

⑥ (생 략)

<신 설>

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제41조
제1항제8호의 의료기기(이하
이 조에서 "의료기기"라 한
다)
<u></u> ③ (현행과 같음)
4)
<u>치료재료·약제 및 의료기</u>
<u>7]</u>
<u>.</u>
⑤
<u>약제 및</u>
의료기기
⑥ (현행과 같음)
제41조의6(가입자의 요양급여대
상 여부의 결정 요청) ① 가입
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정
한 비급여대상(입원, 간호 및

제42조(요양기관) ① 요양급여(간 전화 이송은 제외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있다.

1. ~ 5. (생 략) <신 설>

이걸	<u> </u>	제외	한디	-)을	요ㅎ	냥급여
대성	상으로	를 지	정해	줄	것을	요청
할	수 %	<u> </u>				
(2)	보건	보지	부장	·곾은	는 제	1항에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대상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요청과 제3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・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세42조(요양기관) ①	
	,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의료기기

② ~ ⑤ (생 략)

제101조(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등) ① 「약사법」에 따른 의 약품의 제조업자・위탁제조판 매업자・수입자・판매업자 및 「의료기기법」에 따른 의료기 기 제조업자・수입업자・수리 업자 · 판매업자 · 임대업자(이 하 "제조업자등"이라 한다)는 약제 · 치료재료와 관련하여 제 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거나 제46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 여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 자에게 손실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.

1. ~ 3. (생략)

② ~ ⑤ (생 략)

제101조의2(약제에 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수 및 지급) ① 공단은 제41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조정(이하

임대업자의	영업소
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	0 11-

임대업자의 영업소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01조(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
등) ①
약제·치료재료·의료기기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01조의2(<u>약제 및 의료기기</u> 에
대한 쟁송 시 손실상당액의 징
수 및 지급) ①

이 조에서 "조정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약제의 제조업자등이 청구 또는 제기한 「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재결,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이 집행정지된 기간 동안 공단에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약제의 제조업자등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.

- 1. · 2. (생략)
- ② 공단은 제1항의 심판 또는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재결, 판결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정등으로 인하여 약제의 제조업자들에게 발생한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1. 2. (생략)
- ③ ~ ⑥ (생 략)

<u>제조업자등</u>
<u>제조업자등</u>
1.・2. (현행과 같음)
②
<u>제조업자등</u>
1.・2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 략)